

한화솔루션 감사위원회 규정 (2020.05.12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승인한다.
- ④ 위원회는 ①항 내지 ③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②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우편, 모사전송(FAX)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 전부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

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(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- 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
(2)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1) 이사회에 대한 보고
- 2) 감사보고서의 제출
- 3)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
- 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- 5)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
(3) 감사에 관한 사항

- 1) 업무·재산 조사
- 2) 자회사의 조사
- 3) 이사의 보고 수령
- 4)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
- 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
- 6)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에 대한 승인
- 7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
- 8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
- 9) 감사 계획 및 결과
- 10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
- 11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

(4)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(5) 기타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제 11 조 (내부회계관리제도)

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면서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회의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관계인의 출석)

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간사)

위원회에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5 조 (감사록의 작성)

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 1.3.5, 3.2.2에
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